

직속기관 종합감사

2022년도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3
III.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4
1)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5
2) 교육생 세부평가 계획수립·시행 부적정	8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의 조직·행정·회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기관 업무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이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조직·인사 전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 기관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에 앞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및 언론 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2022. 7. 11.부터 7. 15.까지 5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2. 7. 15.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 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 설립현황 : '61. 12. 16. 공무원교육원 설립
- 위 치 :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설립목적 : 미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공직자 양성

2. 조직 및 인력

- 조 직 : 인재개발지원과 등 2과 6담당
- 인 력 : 정원 35명 / 현원 29명

3. 재정 현황

- 예산규모 : 5,336백만 원(2022년도 기준)

4. 주요 정책과제

- 성과창출 지원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강화
-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 체계적인 평가·환류로 교육성과 극대화
- 교육생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하였고, 향후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표] 감사결과 총괄

구분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 원)				
	계	시정	주의	통보	경고	계	징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감액	부과
계	2	1	1	0	0	1	0	0	1	110	110	0	0	0
처분요구	2	1	1			1			1	110	110			
현지조치	0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붙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시정 요구

제 목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과 등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등에 따라 운임, 일비 등을 국내여비로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치면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¹⁾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및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의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지급하며,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에서는 관외 출장의 경우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하고, 관내 출장의 경우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1만원을 감액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인재개발원 ■■■■■과 등에서는 [표]와 같이 관외 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는데도 일비 10,000원을 감액하지 않았고, 관내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임에도 2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19. 10. 11.부터 2022. 5. 4.까지 소속 직원 출장자 5명에게 국내여비 11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국내여비(일비) 부적정 지급 내역

(단위 : 원)

출장 구분	출장일	출장자			지급액	출장시간	공용차량 이용	과지급액
		소속	직급	성명				
계	11건			5명	210,000			110,000
관외	'19. 10. 23.	■■■■	△△	○○○	20,000	-	○	10,000
	'19. 10. 24.	■■■■	△△	○○○	20,000	-	○	10,000
관내	'19. 10. 11.	■■■■	△△	○○○	20,000	4시간 미만	×	10,000
	'20. 2. 3.	■■■■	△△	○○○	20,000	4시간 미만	×	10,000
	'20. 2. 18.	■■■■	△△	○○○	20,000	4시간 미만	×	10,000
	'20. 2. 18.	■■■■	△△	○○○	20,000	4시간 미만	×	10,000
	'20. 4. 8.	■■■■	△△	○○○	20,000	4시간 미만	×	10,000
	'20. 4. 8.	■■■■	△△	○○○	20,000	4시간 미만	×	10,000
	'20. 4. 16.	■■■■	△△	○○○	20,000	4시간 미만	×	10,000
	'20. 4. 16.	■■■■	△△	○○○	20,000	4시간 미만	×	10,000
	'22. 5. 4.	■■■■	△△	○○○	10,000	4시간 미만	○	10,000

[출처: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인재개발원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출장 관련규정 미숙지, 업무연찬 부족 및 부주의로 인해 잘못 집행되었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등을 위반하여 국내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 ◎◎◎(현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장은

②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등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한 국내여비 110,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제 목 교육생 세부평가 계획수립·시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과에서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학칙」(이하 “교육훈련 학칙”이라 한다) 제11조 등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과정 및 신입인재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생 세부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교육훈련 학칙」 제11조(수료)에 따르면 학습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육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학습평가와 연구활동, 근태평가 등을 포함하여 총점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훈련 학칙」 제25조(평가방법)에 따르면 과정별 세부평가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 ■■■■■과에서는 교육생에 대한 세부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칙 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시행 시 학습평가와 연구활동, 근태평가 등을 포함하여 총점 60점 이상을 획득한 교육생에 대하여 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인재개발원 □□□□□□과에서는 2020. 9. 23. ‘2020년도 하반기 신규임용후보자과정 평가계획’을 수립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온라인) 교육 진행 시 교육생 집중도 하락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고 교육효과 강화를 사유로 기존 평가방식과는 다른 ‘Pass*제’ 도입을 통해 [표 1]과 같이 학습평가 배점 60점 중 40%인 24점 이상을 받으면 만점인 6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구활동, 근태 평가 등의 점수가 포함되지 않아도 수료가 가능 하도록 조정(변경) 하였다.

[표 1] 학습 평가방법 조정(변경) 내역

평가 항목	변경 내용	당 초	변 경
학습평가	- 점수부여방법 변경 - 배점상향(+30)	30점(실점수 적용)	⇒ 60점(PASS제)
개인연구과제	- 배점상향(+20)	10점	⇒ 30점
분임활동	- 배점하향(-40)	40점	⇒ 0점
근태평가	- 배점동일	10점	⇒ 10점
봉사활동	- 배점하향(-10)	10점	⇒ 0점

* PASS제 : 학습평가 점수 40%이상 점수(24점) 획득 시 pass처리(60점 부여)

[출처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표 2]와 같이 △△△, ◎◎◎은 기존 종합평가기준²⁾으로 학습평가의 실제 점수로 평가하였을 경우 총점 60점 미만(각 56.9점, 54.8점)으로 수료할 수 없음에도 조정(변경)된 내부방침을 적용한 평가기준에 따라 수료하게 되었다.

[표 2] 기존 종합평가기준 적용 시 미수료 대상자내역

(단위 : 점)

구분	과정명	교육기간	기존 종합평가기준					내부방침 적용 평가기준				비고
			성명	학습평가(60)	개인연구과제(30)	근태평가(10)	총점(100)	학습평가(60)	개인연구과제(30)	근태평가(10)	총점(100)	
1	2020년 제2기 신규임용후보자과정	'20.10.12. ~10.23.	△△△	26.4 ³⁾	20.5	10	56.9	60	20.5	10	90.5	
2	2020년 제6기 신규임용후보자과정	'20.12.7. ~12.18.	◎◎◎	24 ⁴⁾	22	8.8	54.8	60	22	8.8	90.8	

[출처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종합평가기준 : 학습평가(필기시험으로 개인별 받은 실제점수)+개인연구과제+근태평가 등의 합산점수

3) 학습평가(필기시험)의 100점 만점 중 44점(실제 점수) x 60% = 26.4점

4) 학습평가(필기시험)의 100점 만점 중 40점(실제 점수) x 60% = 24점

또한 [표 3]과 같이 기존 종합평가기준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20명은 성적우수자로 선정될 수 있었음에도 조정(변경)된 내부방침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성적우수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표 3] 기존 종합평가기준 적용 시 성적우수자 내역

구분	과정명	교육기간	기존 종합평가기준 성적우수자 ⁵⁾				내부방침 적용 평가기준	
			성명	소속기관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계	9회		27명					
1	2020년 제2기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20.10.12.~ '20.10.23.	○○○○	■■■■	96	1	96	21
			○○○○	■■■■	95.30	2	96.5	15
			○○○○	■■■■	95.30	3	96.5	15
2	2020년 제3기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20.10.26.~ '20.11.6.	○○○○	■■■■	95.3	1	96.5	12
			○○○○	■■■■	94.6	2	97	8
			○○○○	■■■■	94.1	3	96.5	12
3	2020년 제4기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20.11.9.~ '20.11.20.	○○○○	■■■■	97.5	1	97.5	1
			○○○○	■■■■	97	2	97	7
			○○○○	■■■■	96.7	3	96.7	14
4	2020년 제5기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20.11.23.~ '20.12.4.	○○○○	■■■■	97.33	1(연장자)	97.33	5
			○○○○	■■■■	97.33	2	97.33	5
			○○○○	■■■■	95.6	3	98	1
5	2020년 제6기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20.12.7.~ '20.12.18.	○○○○	■■■■	96.8	1	98	1
			○○○○	■■■■	96.13	2	97.33	6
			○○○○	■■■■	96	3(연장자)	96	22
6	2021년 제1기 신임인재 양성과정	'21.3.8.~ '21.3.26.	○○○○	■■■■	93.87	1(연장자)	96.27	13
			○○○○	■■■■	93.87	2	96.27	13
			○○○○	■■■■	93	3	96.6	4
7	2021년 제2기 신임인재 양성과정	'21.4.5.~ '21.4.23.	○○○○	■■■■	93.8	1	96.2	5
			○○○○	■■■■	92.73	2	96.33	3
			○○○○	■■■■	92	3(연장자)	96.8	1
8	2021년 제3기 신임인재 양성과정	'21.5.24.~ '21.6.11.	○○○○	■■■■	92.26	1	95.87	6
			○○○○	■■■■	91.73	2	95.33	9
			○○○○	■■■■	91.2	3	96	3
9	2021년 제4기 신임인재 양성과정	'21.7.5.~ '21.7.23.	○○○○	■■■■	96.07	1	96.07	3
			○○○○	■■■■	95.47	2	95.47	11
			○○○○	■■■■	93.67	3	96.07	3

[출처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5) 성적우수자 : 종합1위(도지사상 및 경남사랑상품권 20만원 상당), 종합2위(원장상 및 경남사랑상품권 15만원 상당), 종합 3위(원장상 및 경남사랑상품권 10만원 상당)

관계기관 의견

인재개발원에서는 2020년 1기 신규임용후보자양성과정 교육 시 당초 교육기간은 2020. 2. 17. ~ 3. 6.(3주간) 집합 대면 교육으로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어 1주간의 집합교육 후 교육이 잠정 중단되었고, 이후 교육을 재개 하였으나 2020. 4. 20.~ 5. 1.(2주간)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부득이 학습 평가를 온라인으로 시행하고, Pass제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생 세부평가 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처리과정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